

캡스톤디자인 운영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학의 건학이념 및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학사과정의 교육과정을 위하여 서울캠퍼스 단과대학 및 학과(전공) 등에서 실시하는 “캡스톤디자인(Capstone Design)(이하 “캡스톤디자인”)” 교과목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① 캡스톤디자인은 학생이 1, 2학년 때에 배운 전공 이론을 바탕으로 과제 기획, 수행, 분석 등의 과정을 2인 이상의 팀 활동을 통해 경험하게 함으로써 산업현장과 사회에서 요구하는 문제해결 능력, 협업 능력, 실무 능력 등을 갖춘 창의융합적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종합설계교과목을 의미한다.

② 캡스톤디자인 주관 단과대학 및 주관학과(전공)는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단과대학, 학과(전공) 등을 의미한다.

제3조(강좌 개설) ① 캡스톤디자인은 3학년과 4학년 대상 교과목으로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명칭은 캡스톤디자인(Capstone Design) 또는 종합설계를 부기하여야 한다.

③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은 주관학과(전공) 교육과정 개설학점에 포함되며, 융합교육 활성화를 위해 단과대학별 공통 교육과정 및 교양교육과정으로 개설할 수 있다.

④ 캡스톤디자인 시제(작)품 제작을 위한 실험실습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4조(이수자격) 캡스톤디자인 이수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캡스톤디자인을 이수하기 전에 4개 학기(계절학기 제외) 이상을 이수한 자
2. 캡스톤디자인 주관학과(전공) 및 주관부서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신청 자격을 충족한 자
3. 캡스톤디자인과 연계한 기업, 지역사회 등에서 요구하는 신청 자격을 충족한 자

제5조(수업일수 및 학점) ① 수업일수 및 학점부여 기준은 학칙 제16조(수업일수) 및 제34조(학점부여기준)를 따른다

② 담당교수는 수업일수 확보를 위하여 보장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.

제6조(성적평가) ① 캡스톤디자인 성적평가 기준은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40조(서울캠퍼스 성적평가)를 따른다.

② 캡스톤디자인 성적은 강의계획서의 내용과 중간보고서, 결과보고서, 결과발표회 등을 근거로 강좌담당교수가 평가한다.

제7조(운영방법) ① 캡스톤디자인 주관 단과대학 및 주관학과(전공)는 소속 전임교원을 강좌담당교수로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필요한 경우 학과(전공) 해당 분야의 산업체·지역사회 전문가 등을 강좌담당교수로 위촉할 수 있으며, 강좌담당교수는 캡스톤디자인 과정 전반을 책임지고 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캡스톤디자인은 2인 이상의 팀 활동으로 운영하여야 한다.

③ 강좌담당교수는 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사전지식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, 사전교육의 기간, 내용 및 강사는 전공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.

제8조(결과보고서 및 제출시기) ① 캡스톤디자인 수강생은 팀 활동 결과보고서를 강좌담당교수의 지도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캡스톤디자인의 2인 이상의 팀 활동 결과보고서는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73조(졸업논문)의 실험 실습보고서로써 졸업 요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주관학과(전공)에서 정할 수 있다

③ 캡스톤디자인의 2인 이상의 팀 활동 결과보고서는 강좌담당교수가 지정한 날짜까지 지정된 양식 및 규격에 따라 작성하여 캡스톤디자인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(2021.7.12. 개정)

제9조(관련서류 보관) 캡스톤디자인 성적관련 근거자료는 해당연도 종료일 이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
제10조(정보공유) 캡스톤디자인 강좌담당교수는 캡스톤디자인 운영과 관련하여, 교육혁신센터, 교무학생지원팀 및 관련 부서의 정보 요청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.(2019.9.16. 개정)

부 칙(2018.10.22. 제정)

이 제정 규정은 2018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9.8.21. 개정)

이 개정 규정은 201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9.9.16. 개정)

이 개정 규정은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1.7.12. 개정)

제1조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개정 전 이루어진 업무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.